

약관명	해당약관조항		
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	수정전	수정후	비고
	<p>제 9 조 (지급특례)</p> <p>은행은 예금주의 수표 및 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.</p> <p>1.각종이자, 지연배상금, 보증료, 수수료</p> <p>2.수입어음원금,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,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</p> <p>3.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</p>	<p>제 9 조 (지급특례)</p> <p>은행은 예금주의 수표 및 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.</p> <p>1.각종이자, 지연배상금, 보증료, 수수료</p> <p>2.수입어음원금,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,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</p> <p>3.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</p>	<p>은행의 포괄적 상계(채무변제 총당) 사유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삭제</p>

(붙임) 2. <신구조문대비표>